
2025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바우처 R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5. 3.

목 차

I.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II. 사업내용	8
1. 지원내용	9
2. 자격요건	11
III. 신청방법	13
1. 과제신청	14
2. 문의처	16
IV. 과제선정	17
1. 선정절차	18
2. 선정기준	19
V. 유의사항	20
1. 신청요건	21
2. 의무사항	22
3. 제재사항	24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디지털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ICT 전문기관(기업)과 연계(매칭)하여 디지털 혁신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이 필요*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도 취약하고, 해외 진출 준비도 부족한 상황
 - 글로벌 스타트업 중 한국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며, 인도와 중국과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존재
 - * 미국(33.6%), 영국(7.1%), 인도(5.5%), 중국(3.3%) 등(스타트업DB 크런치베이스, '00년~'19년)
 -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
 - * 한국 스타트업 평가(Kotra '23, 포춘기업 대상) : 글로벌진출 준비도(4%),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5%), 우수한 인재 Pool(14%), 정부의 다양한 지원모델(20%), 혁신기술의 경쟁력(55%)
-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창업현장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요구
 - 국내 벤처 생태계를 견인중*인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필요
 - * '21년 전체창업은 4.5% 감소했으나 정보통신 창업기업수는 전년대비 24% 증가, '20년 36,760개(21.2% 증) → '21년 45,578개(24% 증)
 -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 특히, 해외진출 여력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新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추진경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2.09.)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과제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벤처 육성 지원

□ 관련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및 부속지침
 -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91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6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50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2021-159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90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2021-161호)
-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선정과제 협약시 관련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련규정 적용 예정

2

추진체계

- (목적) 글로벌 지향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의 레퍼런스* 적용 지원
 - *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협의 시, 디지털 혁신기업에 공신력 있는 국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지원대상)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있는 디지털 혁신 중소·스타트업
- (지원기간) 과제 협약일 ~ '25. 11. 30.
- (지원규모) 총 30개 과제 내외(바우처 신청금액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 5개 지역 x 6개 컨소시엄(혁신기업+실증기관) x 컨소시엄당 50백만원
 - * 부산지역 6개 컨소시엄 선정 예정(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기업 및 지역시설(도로, 공원, 빌딩, 관공서,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검증하여 레퍼런스 확보 지원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1.30.(일)
- (지원방식) 과제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내로 지원되며, 공급기업에 인건비, 클라우드 사용료 등을 사업비 인정항목 내에서 지원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순서	대상	내용
1	수요기업(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R바우처 수요기업 Pool 등록
2	공급기업 → 수요기업	R바우처 매칭 및 사업계획서 등록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급기업	R바우처 수행 기업 선정
4	공급기업 → 수요기업(기관)	R바우처 수행, 레퍼런스 확보
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급기업	과제 검토, 사업비 지급

○ (수요기업(기관))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기관) POOL'에 등록 적합성 검토를 득하여야 함
 ○ (공급기업) '수요기업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R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3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수요기업 POOL 참여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POOL' 모집 기간(2.17.~2.27.) * 단, 공고기간 외 추가 수요처 등록이 진행될 수 있음 	
↓		
수요기업 검토/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검토 진행 - 모집된 수요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 - 심사 결과, 부적격 수요기업은 2024년 과제 신청 불가 * 수요기업 등록 여부는 심사 후 홈페이지 통보 • 등록된 수요기업의 필요제품/서비스 정보 제공 * 수요기업 등록정보는 수행기관 홈페이지 통해 공개 	수요기업POOL 제공
↓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고 - 공고 일자 : 2025.03.04.(화)~2024.03.21.(금) 15:00 	홈페이지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고 - 참석대상 :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 * 사업설명회 일정, 방식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요-공급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율적으로 매칭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접수 마감 - 마감 일시 : 2024.03.21.(금) 15:00 * 접수서류는 공모안내서 내 제출 서류 참조 	
↓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3월), 서류합격과제 발표(3월)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 발표평가(4월) 예정 *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세부 일정을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심의, 최종 선정과제 발표(4월) • 협약체결(5월~11월) 	수행기관
↓		
바우처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진도 상황 점검 • 예산 점검 진행 	NIPA 및 수행기관
↓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2월) • 성과공유회(12월)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과제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참여기관(공급기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참여기관(공급기업)	
<정부지원금>	
* 비목별 과제수행 연관성 확보 필수	
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인정 항목 외 모든 비용 불인정 (예시) ○ 데이터 수집·구매·정제·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 일체 ○ SW기술 전문가 자문비 등 일체 자문비 ○ 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 ○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 세금납부 ○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위탁정산수수료	
② 인건비(총 사업비의 70%까지)	
- 솔루션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③ 기타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클라우드 임차비)	
- 업무추진비(수요·공급기업간 회의비 등)	
④ 재료비	
- 실증 관련 재료비	
⑤ 인증비	
- 해외인증 관련비용	
-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출원비	
<현금 대응자금>	
*예산포함 계획(안)-결과보고 수행기관에 보고 필수	
⑥ 임차료	
- 전시회 참여 관련 임차료	
⑦ 국외여비	
- 과업 관련 국외여비	

* 인건비는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회계정산 수수료(5천만원: 800,000원 5천만원 미만: 600,000원)

□ 민간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필수로 매칭해야 하며, 사업비 산정구조는 아래와 같음(천원단위 절상)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100%) = 현금(100%)
 -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함

< 사업비 산정구조 (※ 사업비 계산 [별첨2] 참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창업·벤처·중소기업/비영리기관 (청년기업인 경우)
공급기업	20% 이상 (10% 이상)
공급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기준	
공급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청년기업* 해당)	
* 수요기업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1985.3.4. 이후 출생자)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	

* 민간부담금은 100% 현금만 산정 가능

-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자격요건

□ 수요기업 자격요건

- 공개된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 미등록된 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기존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 수요기업은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1)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1.2.17.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2~'24)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공급기업 자격요건

○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R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1)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1.2.17.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2~'24)**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Ⅲ

신청방법

1

과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대상)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을 공급기업으로 하며, 수요기업은 공개된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함.

*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 신청대상(수요 및 공급기업)은 법인사업자가 원칙

○ **공급기업**은 지역내 R바우처 수요처 연계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한 모델 제시

○ 공급기업은 1개 수요처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

- (신청기간) 2025.03.04.(화) ~ 2024.03.21.(금) 15:00

- (신청방법)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제출(우편·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kgy@busanit.or.kr (이메일 접수)

□ 사업내용 문의처

- (이메일) kgy@busanit.or.kr

- (유선) 051-749-9375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작성양식	제출서류		비고	
		공급기업	수요기업		
1	사업계획서	서식1호	○	X	
2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호	○	X	공급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3호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호	○	○	
5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서식5호	○	△*	
6	공급기업 글로벌 진출역량 및 25년 예상성과 * 25년 글로벌 진출 예상성과 증빙자료(해외수출계약/MoU/NDA/PoC) 등	자유양식/24년도 발행분	○	X	
7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4.05.13. 포함
9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21~'23년) *'23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취소됨	고유양식에 따름	○	△	'23.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10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 확인서)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4.05.13. 포함
11	법인등기부등본 *청년기업에 한함(민간부담 또는 가점)	고유양식에 따름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 외 비공개)

* △ 수요기업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일 경우 제출서류 생략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 *(예시)1.사업계획서_한강프로
-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소프트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프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소프트플랫폼]로 제출

※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공급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요기업(기관) 등록 시 既 제출한 공급기업 서류도 공급기업 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과제신청은 공급기업이 공개된 수요기업(기관)POOL 내의 수요기업(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

- 과제접수는 공급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메일 접수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으로 접수를 진행해야 함
 -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하루 전 메일접수 요망
 - 마감시간까지 메일을 송부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 불가
 -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메일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5. 03. 21.(금), 15:00

-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공급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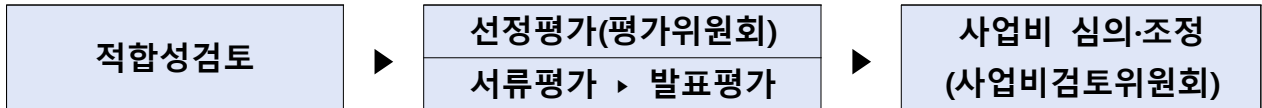
과제선정

1

선정절차

- (평가절차)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을 거쳐 최종 확정

< 과제 평가 절차 >



-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 R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공급기업/수요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 수요기업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 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1개 공급기업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운영

- (사업비 심의)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ICT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단,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서류 · 발표 평가 (100)	① 과제 목표 타당성 (15)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 과 필요성 ○ 솔루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 최종목표, 성과목표, 성능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②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5)	○ 추진계획(목표,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수요기업에 도입하는 솔루션 및 적용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진출 계획의 구체성
	③ 사업 효과성 (20)	○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증가, 투자유치, 수출 등) ○ 현장 혁신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 ○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기업 성장가능성 등 사업효과성
	④ 지역이해도 (10)	○ 지역 기반 특화 사업에 대한 이해 ○ 지역 소재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전략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성 제시
	⑤ 수요기업 역량 (10)	○ 과제 수행 역량(도입환경, 참여인력 구성 등) ○ 사업 수행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 향후 솔루션 도입 제품·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
	⑥ 공급기업 역량 (20)	○ 과제에 적용할 솔루션의 우수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 수요기업 적용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⑦ 글로벌 진출 타당성 (10)	○ 수익창출 가능성 명확한 글로벌 마케팅 계획 제시 ○ 해당 지역 진출 예상 성과(계약/협약/해외실증 등) ○ 진출 타겟 시장 분석 및 전략 제시
가점 항목	① 청년기업 (최대 1점)	○ 청년기업(대표자 중 1인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
※ 가점 적용 후 동점자 발생시 순위 확정 기준 (*점수기준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진출 타당성(총10점)이 높은 순 2) 지역이해도(총10점)이 높은 순 3) 과제 목표 타당성(총15점)이 높은 순 4)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총15점)이 높은 순 5) 사업 효과성(총20점)이 높은 순 (*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V

유의사항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R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기관)은 반드시 수요기업(기관)POOL 등록 적합성 검토를 득해야 함
-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 신청 불가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결과는 개별통보되지 않으며,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사업공고일 기준)인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既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 (심의위원회 제척) ICT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사항

□ 사업일반

- 사업비(정부출연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 또는 0원 잔액이 명시된 사업비 통장을 사용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 수출, 특허,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성과에 응해야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선정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 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수요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수요기업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